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09호 2021. 6. 21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조례 제79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21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-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,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자 함.
- 사업 완료 후 구축된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각 사업의 중간조직이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활력플러스 사업 범위 조정(안 제3조)

-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곤충에서 산업전반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.

나. 추진단의 업무 조정(안 제8조)

-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및 희망키움 마켓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·운영 등 사업 완료 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

다. 추진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조직의 통합 운영 가능(안 제9조)

-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중간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함.

라.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유무형 자산을 추진단이 관리 후 보조사업자에 양도(안 제9조)

-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단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사업자에 양도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·관리·감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마. 추진위원회 위원 증원(10명→15명)(안 제14조)

-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위원의 인원을 증원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의2 및 제31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추후 반영(1,260천원)

라. 규제심사 : 의뢰 예정

마. 성별영향평가 : 의뢰 예정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lucky777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기획감사실

3) 팩스 : 054-650-60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(전화: 054-650-682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역 특화 산업의 개발과 활성화를 등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

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항) 제5호 중 “완료사업”을 “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 완료사업”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군수는 추진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.
- ⑥ 추진단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사업체에 양도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중 “10명 이내”를 “15명 내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업 범위) 이 조례에서 신 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사업 범위) ----- ----- -----.
1. <u>산업곤충 연구 인프라 구축, 곤충생태원 및 곤충관련 축제 활성화, 곤충산업 종사 지역주 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 업</u>	1. <u>지역 특화 산업의 개발과 활 성화를 등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</u>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업무) ① 추진단은 신활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.	제8조(업무)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· 운영 등 사후관리</u>	5. <u>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조성 된 시설물 등 완료사업</u> ----- -----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운영) ① ~ ④ (생 략)	제9조(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⑤ 군수는 추진단과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중간조직을 통합 운 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⑥ 추진단은 보조사업으로 지원</u>

	<u>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사업체에 양도할 수 있다.</u>
제14조(추진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<u>10명 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4조(추진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명 내외</u>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【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】

제10조의2(시·도 및 시·군·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) ①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, 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“시·도 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위원회”라 한다)를 각각 둔다. 다만, 시·도 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수산업·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>

② 시·도 위원회 및 시·군·구 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 7. 23.]

제31조(농어촌산업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·전통문화·경관 등 유형·무형의 자원(이하 “특산물등”이라 한다)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,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

(이하 “농어촌산업”이라 한다)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0.>

1. 특산물등의 조사·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
2.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
3.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·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
4.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
5.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·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
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
7.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
8.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
[전문개정 2010. 7. 23.]